

평생교육원 규정

(제정 1986. 7. 30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의 지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교양교육 및 전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평생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2.27.>

제2조(명칭) 본 교육원은 전주대학교 부속 평생교육원(이하 “평생교육원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위치) 평생교육원은 본교 내에 둔다.

제4조(기능)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.

1. 일반교양 및 자격증과정
2. 학점은행제
3. JJ골프교육장 <개정 2015.12.27.>
4. 위탁 교육과정
5.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조직

제5조(조직) 평생교육원에 원장과 직원(계약직 및 조교 포함)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- | | |
|------------|-----|
| 1. 원장 | 1인 |
| 2. 주임강사 | 약간명 |
| 3. 연구위원 | 약간명 |
| 4. 직원 및 조교 | 약간명 |
| 5. 운영위원 | 약간명 |

제6조(평생교육원장) ① 평생교육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원장은 평생교육원을 대표하며, 평생교육원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6조의2 삭제 <2019.9.1.>

제6조의3(주임강사) ① 주임강사는 수업을 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학점은행제는 전공별로 주임강사를 임명할 수 있다.

② 주임강사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하고, 운영현황 분석 및 신규 교육과정의 개발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15.2.2.>

[본조 신설 2014.2.27.]

제7조(연구위원) ①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위원은 교육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을 하여야 한다.

③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직원 및 조교) 제4조에 정한 직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9조(구성) ①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,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회의록은 3명 이상의 서명·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3. 평생교육원 관련 제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4장 교육과정 운영 등

제12조(학기구분 및 교육기간) ① 평생교육원의 학기는 정규학기(봄학기, 가을학기)와 계절학기(여름학기, 겨울학기)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② 교육기간은 정규학기는 15주, 계절학기는 8주로 하되,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원장이 교육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13조(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) ①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

② 신규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강의시작 3개월 전에 [별지 1]의 서식에 따라 강의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평생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개설이 확정된 강좌는 매 학기시작 2개월 전에 [별지 2]의 서식에 따라 수업계획서를 작성하

여 평생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산입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. <개정 2015.6.18.>

④ 수업계획서 미제출, 부실한 강의운영, 수강인원 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좌의 개설을 폐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5.6.18.>

[본조 신설 2014.2.27.]

⑤ 위의 제②, ③항에도 불구하고,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
제14조(강사자격)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하는 각 과정별 강사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. 다만, 해당 과정의 교육목적,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[본조 신설 2014.2.27.]

제15조(수강료 및 강사료) ① 수강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.

② 평생교육원의 수강생은 각 강좌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수강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수강을 취소하고 수강료를 환불받기를 원할 경우 [별지 3]의 서식에 따라 수강포기 및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평생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하며, 수강료 환불금액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다.

④ 강사료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 신설 2014.2.27.]

제16조(포상과 징계)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은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.

② 학습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수강생은 징계할 수 있다.

[본조 신설 2014.2.27.]

제17조(수료증서) ① 평생교육원의 각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[별지 4]의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한다.

② 수료증을 수여하는 기준은 출석률 80% 이상인 자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

[본조 신설 2014.2.27.]

제18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 신설 2014.2.27.]

제5장 재정

제19조(회계) 평생교육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교비 회계에 따른다. <개정 2014.2.27.>

제20조(회계연도) 평생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 <개정 2014.2.27.>

부 칙

- ① 이 규정의 모든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이 규정은 198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구 평생교육원 규정은 자동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이 규정은 1995년 3월2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회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] 강의개설신청서

강 의 개 설 신 청 서

교육학기	☐ 봄학기 ☐ 여름학기 ☐ 가을학기 ☐ 겨울학기		
과 목 명			
개설목적			
교육내용 및 방법			
교육시간	[]요일 ☐ 오전 ☐ 오후 시 분 ~ 시 분		
수 강 료	원	재 료 비	원
모집정원	명	강의개설 최소인원	명
수강자격			
강 사 명		전화번호	
e - Mail			
강사경력 및 이력사항			

※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작 성 자 :

①

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귀하

[별지 2] 수업계획서 <개정 2015.6.18.>

수업 계획서

과 목 명			
교육시간	[]요일	☐ 오전	☐ 오후 시 분 ~ 시 분
강 사 명		전화번호	
수 강 료	원	재 료 비	원
모집정원	명	강의개설 최소인원	명
주 차	주 요 강 의 내 용		
1			
2			
3			
4			
5			
6			
7			
8			
9			
10			
11			
12			
13			
14			
15			

※ 계절학기의 경우에는 1~8주차만 작성하면 됩니다.

20 년 월 일

작 성 자 :

인

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귀하

[별지 4] 수료증

제 0000 - 0000호

수료증

성명 : ○ ○ ○

생년월일 : 0000년 00월 00일생

위 사람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(총〇〇시간)까지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이 개설한 『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과정』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
0000 년 00 월 00 일

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장 ○ ○ ○ (직인)